

입 법 예 고

예천군 환지청산금 취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7월 23일

예 천 군



예천군 환지청산금 취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○ 상위법령인 「농어촌정비법」이 개정되어 조문순서가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「농어촌정비법」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(안 제1조, 제5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(안 제8조, 제14조)

3. 개정규정안

- 붙임과 같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근거 : 「농어촌정비법」 제3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과 같음
- 다. 예산현황 : 해당 없음
- 라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- 마. 입법예고 결과 :
- 바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- 사.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5. 의견제출

-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(참조 : 건설교통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항목별 의견 : 찬, 반 여부 및 그 사유
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 - 기타 참고사항
 - 보내실 곳 : 예천군청 건설교통과(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)
 - 전화 054-650-6333 팩스 054-650-6339
-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(<http://www.yecheon.go.kr/>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예천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예천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농어촌정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2조제5항에 의한”을 “「농어촌정비법」 제37조제5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법 제41조제6항에 의한”을 “「농어촌정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6조제6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「지방세법」 제28조”를 “「농어촌정비법」 제37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법 제41조제6항에 의한”을 “법 제26조제6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제7조제1항에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7조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농어촌정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2조 제5항에 의한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농어촌정비법」 제37조 제5항 ----- ----- ----- -----
제5조(납부통지)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41조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의 납부통지서 별지 제1호 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.	제5조(납부통지) ① ----- 「농어촌정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6조제6항에 따른----- -----, -----
제7조(징수금의 독촉) ①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「지방세법」 제28조에 따른다.	제7조(징수금의 독촉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「농어촌정비법」 제37조제6항-----.
제8조(청산금의 교부) ①~② (생략) ③ 교부금은 법 제41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징수목표 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징수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. ④ (생략)	제8조(청산금의 교부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제14조(가산금 처리) <u>제7조제1항의</u> <u>규정에 의거</u>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업무추진비 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대상자에 게 안내하여 교부할 수 있다.	제14조(가산금 처리) <u>제7조제1항에</u>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
입법예고 의견 제출서

〈의견제출〉

입법예고명	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	찬·반 여부	찬·반여부에 따른 의견
	제○조 제○항	찬성	... 이유로 찬성
	제○조 제○항	반대	...이유로 반대 및 ...로(의견제시)

〈의견제출자〉

○ 주 소 :

○ 연락처 : (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)

○ 성 명 : ○○○(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